

의안번호	2219605
의 퇴 인	이종배 의원
회 답 일	2026. 7. 10.
추 계 번호	26A3177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(전기품질 등의 유지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,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2	안 제20조(전기설비의 이용 제공)	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(제5항)	의무규정
3	안 제20조의2(전기설비의 정보 공개)	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4	안 제22조(사실조사 등)	-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(허가권자가 시·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·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-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5	안 제25조(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와 전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함. 다만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함(제2항)	
6	안 제27조(송전사업자 등의 책무)	○ 송전사업자는 송전·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(제2항) ○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배전 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(제3항) ○ 전력감독원은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의 설비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하여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7	안 제27조의2(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)	○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·평가 및 조사 등(이하 “전력계통 신뢰도 관리”라 한다)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8	안 제41조(정보의 공개)	○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9	안 제45조(전력계통의 운영방법)	○ 전기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하여 적절성,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·조사하여야 함(제3항) ○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.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(제4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10	안 제45조의2(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독)	○ 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에너지원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급의 안정성·경제성·환경성에 대한 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11	안 제49조(기금의 사용)	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함 - 10의3.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2	안 제53조(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	○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,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,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전원 구성의 유지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의결과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(裁定)을 위하여 전기위원회를 둠(제1항) ○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 및 위원 2명은 상임으로 함(제2항)	의무규정
13	안 제56조(전기위원회의 기능)	○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함(제1항) － 10의2. 제2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 － 10의3. 제27조에 따른 송전·변전설비계획, 배전설비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－ 13의2. 제41조에 따른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 － 13의3. 제45조제4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－ 13의4. 제45조의2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독에 관한 사항 － 13의5. 전력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14	안 제59조(전문위원회)	○ 전기위원회는 심의·의결사항 및 재정에 관한 사전검토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5	안 제60조의2(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)	○ 제3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책무 이행 및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, 제도 개발 및 감시·조사 등 기술 지원을 위하여 전력감독원을 설립함(제1항)	의무규정
16	안 제60조의3(사무소)	○ 전력감독원은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원, 연구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7	안 제60조의6(업무)	○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함(제1항) － 1. 전력시장·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지원 － 2.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의 허가·등록, 약관, 요금에 관한 기술 지원 － 3. 전기품질 유지, 전기설비의 이용, 정보공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－ 4. 송전·변전, 배전 설비계획 조사·평가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－ 5. 제15조에 따른 송전용·배전용 전기설비 이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기술 지원 - 6. 제16조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기술 지원 - 7.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감시·평가 및 조사 - 8.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기술 지원 - 9.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에 대한 지원 - 10.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및 중개시장의 소규모 전력자원 모집·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- 11. 전력시장·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, 전문인력의 양성·교육 및 국제협력 - 12.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- 13.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- 14.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	
18	안 제60조의8(운영재원)	○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함(제1항) - 1. 제60조의9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- 2. 제60조의10에 따른 부담금 ○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19	안 제60조의9(출연금 또는 보조금)	○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0	안 제9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○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전기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음(제3항) - 1.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업무 - 2.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 마련 - 3. 제45조제3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한 평가·조사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8조(전기품질 등의 유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0조(전기설비의 이용 제공)	
3	안 제20조의2(전기설비의 정보 공개)	
4	안 제22조(사실조사 등)	
5	안 제25조(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)	
6	안 제27조(송전사업자 등의 책무)	
7	안 제27조의2(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)	
8	안 제41조(정보의 공개)	
9	안 제45조(전력계통의 운영방법)	
10	안 제45조의2(한국전력 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독)	
11	안 제49조(기금의 사용)	
12	안 제53조(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	
13	안 제56조(전기위원회의 기능)	
14	안 제59조(전문위원회)	
15	안 제60조의2(한국전력 감독원의 설립 등)	
16	안 제60조의3(사무소)	
17	안 제60조의6(업무)	
18	안 제60조의8(운영재원)	
19	안 제60조의9(출연금 또는 보조금)	
20	안 제9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

2. 상세 사유

가. 전기위원회의 업무 및 조직 확대(안 제18조·제25조·제27조의2·제41조·제45조·제45조의2·제53조·제56조·제59조)

□ 개정안은 현행 전기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심의·의결기구로 변경하면서, 전기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고 위원 수를 늘리는 등 현행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○ 먼저, 개정안은 전기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심의·의결기구로 변경하고,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(안 제53조 등)

－ 전기위원회의 현행 위원 수는 9명 이내(위원장 1명 포함)이나 개정안은 12명 이내(위원장 1명 포함)로 확대함¹⁾

－ 또한, 전기위원회의 업무 확대와 심의·의결기구로의 전환으로 사무기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○ 다음으로,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“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” 등을 명시하고(안 제53조제1항),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 등을 심의·의결하도록 하고 있어(안 제18조제3항)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－ 개정안의 “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” 등의 업무는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전력감독원의 주요 업무임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확대되는 전기위원회의 업무와 조직의 구체적인 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참고로, 2026년도 전기위원회의 예산(기본경비 등)은 2억 2,900만원이며, 2025년 회의 개최 실적은 총 14회(전문위원회 3회 포함) 정도임

1) 또한,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규정함(안 제53조제3항)

나.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(안 제20조·제20조의2·제22조·제27조·제60조의2·제60조의3·제60조의6·제60조의8)

□ 개정안은 전력시장·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,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○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전력감독원의 구체적인 업무는 안 제60조의6에 명시되어 있으며, 동 감독원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·보조금과 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함(안 제60조의8)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감독원의 정관으로 구체화될 업무의 내용과 조직 규모, 그리고 감독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·보조금 소요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참고로,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「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07277호)의 전력계통감독원의 설립에 대하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정한 업무 및 인력, 운영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

- (업무) 전력계통 신뢰도기준 조사·평가·자문, 전력계통 운영의 적절성 실시간 감시, 전력계통 사고·고장 원인분석 등
- (인력) 총 49명

조직명		직무내용	인원(명)
감독원장		총 관	1
성과감사팀		감사, 내부평가, 혁신, 윤리경영 등	3
경영기획실		전략기획, 국회/정부, 총무, 재무, 인사/교육, 법무/노무, 내부시설 관리 등	6
개발본부	계통기준실	- 계통신뢰도기준 개발 및 운영·관리 - 계통신뢰도 평가지수 개발, 전기품질 분석·관리	10
	계통감시실	- 계통운영의 적절성 실시간 감시(교대근무 4명) 신뢰도기준 준수 감사 및 조치	7
	정보보안실	EMS, MOS, SCADA, RTU 등 사이버보호 기준 수립 및 점검, 감독원 전산설비 보안 총괄	5

조직명		직무내용	인원(명)
평가 본부	평가분석실	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성 평가 수요예측, 장단기 계통신뢰도 평가, 계통DB관리	8
	고장조사실	계통사고 및 설비고장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전력설비 안전 관리, 고장데이터 관리	5
	자격증운영실	계통운영요원 자격인증제 운영	4
계			49

－ (운영예산) 설치 이후 5년간 547억원 소요 예상(연평균 109.4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기준개발	12	3	3	3	3
기관운영	98	105	102	109	109
계	110	108	105	112	112

다. 기금 용도의 확대 등(안 제49조·제60조의9·제98조)

-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“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”을 추가하고, 동 기금에서 한국전력감독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또한, 개정안은 한국전력감독원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(안 제98조) 위탁에 따른 재정지원의 추가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현시점에서 한국전력감독원의 조직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비 소요를 추정하기 어려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은 3조 1,164억원, 총지출은 2조 6,890억원 규모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